

**비지급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
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 20분)

-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

치 조례증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관리국장 김근학 교육청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위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현재 교육위원에게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4473호)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교육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근거법령 수정(조례 제1조)

나.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와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조례 제4조)

3.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나. 지방자치법 제32조(준용)

4. 조례안 : 별첨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현재 교육위원에게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4473호)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근거법령 수정(조례 제1조)

나.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와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조례 제4조)

3.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나. 지방자치법 제32조(준용)

4. 조례안 : 별첨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
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여비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
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제 2 조~제 3 조(생략)	제 2 조~제 3 조 (현행과 같음)
제 4 조(여비지급)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 4 조(여비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 할 때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제9조(생략)	제5조~제9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참 고 별 령)

지방교육차치에관한법률

제24조(지방차지법의 준용) 지방자치법 제5조, 제32조, 제34조의 2,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3조, 제59조 내지 제68조, 제7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원”은 “교육위원”으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위원장”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 제32조(의원의 보수) ①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